

제 792 호  
1980. 7. 31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정 삼 천  
편집: 문화공보관 박 봉 우  
전화: 75-7834  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달간실  
전화: 75-6090

# 시 보

## 자 려

◎ 규 칙	
제 1868 호:	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..... 3
◎ 교 시	
제 272 호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 ..... 3
제 273 호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 ..... 4
제 274 호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 ..... 4
제 275 호:	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 ..... 5
제 276 호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..... 5
제 277 호:	도시계획 미판지구 지적승인 ..... 6
제 278 호:	도로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고시 중 일부 변경 고시 ..... 7
제 279 호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..... 8
제 280 호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철폐 및 변경 ..... 9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# 서울특별시

◎ 공 고

제 237 호 :	열사용기 자재 제조업체 허가 소공고.....	10
제 244 호 :	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일부변경및 환지구획변경공탁 공고.....	10
제 245 호 :	공인개작사용승인공고.....	11
제 246 호 :	공인개작사용승인공고.....	11
제 247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.....	12
제 255 호 ( 강남구공고 ) :	공인신조사용공고.....	12
제 302 호 ( 관악구공고 ) :	토지수용재결을위한열람공고.....	15

◎ 정 경

**규 칙**

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1980년 7월 31

○ 서울특별시규칙제 1868 호
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8조의 2 제 2항제 2호중 "차"를 "파"로 하고 "차" "카"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차. 예산집행과 지출의 사전감사  
카. 입찰의 입회 및 공사, 제조, 물품의 검사 또는 입회

제 38조의 2 제 2항제 3호중 "카"를 삭제한다.

제 39조제 2항제 1호중 "파"를 "하"로 하고 "파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파. 산화방지협조업무

제 39조제 2항제 2호중 "자"를 삭제한다.

제 40조제 2항제 1호중 "다" "라"를 삭제하고 "마" "바"를 "바" "사"

로 하며 "다" "라" "마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교통순시원시험관리 임용제청등 인사관리와 지도감독

라. 교통순시원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

마. 교통안전운전관리자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

제 40조제 2항제 2호중 "마" "바" "카"를 삭제하고 "사" "내지" "차"를 "마" "내지" "아"로 한다.

제 41조제 2항제 3호중 (방호제) 중 "마"를 삭제하고 "나" "내지" "리"를 "다" "내지" "마"로 하고 "나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청원경찰의 임용승인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고 시**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72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시고시제 227 호 ( 80. 7. 4 )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5조와 동법제 26조 및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동작구청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80. 7. .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의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(상도동 794 ~ 본동 258)
- 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상도터널 ~ 봉천 동간도로건설
- 3. 사업규모 :
  - 가. 도로확장 : B = 10 ~ 35m , 20 ~ 50m , L = 2,120m
  - 나. 터널 : B = 10.4m X 2열 L = 570m
  - 다. 차도육교 (3개소) B = 8.0m ~ 15.3m L = 1,190m
- 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- 6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 - 1982.12.31
- 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
- 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8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, 성명 : 별첨토지조서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73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

- 1. 건설부고시제 46 호 ( 68.1.18 )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5조와 동법제 26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( 79.12.10 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- 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80. 7. 28.

서울특별시

- 1. 사업시행의위치 : 마포구 현석동 155번지 ~ 통소 147번지
- 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강변 4로급회전부가각정리공사
- 3. 사업규모 : 폭 0 ~ 17m 확장 연장 233m
- 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- 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사업인가일 - 1980.12.31
- 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
- 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, 성명 : 별첨토지조서생략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74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

- 1. 건설부고시제 198 호 ( 71.4.7 )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5조와 동법제 26조 및 건설부고시제

463호(79.12.10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80. 7. 28  
서울특별시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75 호  
도시계획시설(학교)지적승인

1. 사업시행의위탁: 강남구양재동 4의 2 ~ 강동구내서동 8의 8

2. 사업의종류및명칭: 양재동~영동대로간도로건설공사

3. 사업규모: 폭 26 ~ 70m  
연장 4300m

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

5. 착수및준공예정일: 사업인가일 1980.12.31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지적승인조서
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소재지 4번점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, 성명: 별첨토지조사생략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169 호(80.5.12)로 건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호(79.12.10)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
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도시경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문백국민학교	구로구시흥동 산 54-1 일대	11,914 (3,604평)	

1980. 7. 28  
서울특별시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76 호  
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이 서울시 고시제 231호(80.6.23)에 의거 변경결정이 되었기 도시계획법제 13조규정과 건설부고시 463호(79.12.10)의 권

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지적 승인한다.  
 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박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 
 1980. 7. 29  
 서울특별시청

구분	등급	유별	축원	연장	기	점	중	점	비	고
기정	소로	3	6	143	망원동	426	망원동	427		
변경				49	망원동	427				노선축소

\*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77 호  
 도시계획미관지구지적승인  
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(79. 12. 10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  
 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도시정박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 
 1. 서울특별시고시제 381 호 (78. 1. 31) 로 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 및 신설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 
 1980. 7. 30.  
 서울특별시청

○ 미관지구 지적승인조서

구분	지구명	종별	번호	연장	축	기	중	점	점	
기정	미관지구	4종	56	9,000	도로반	사	당	동	갈	실
변경			75	5,800	양측 12				도	국
신설			98	2,600		도	국	동	갈	실
		3종	13	600					도	국
기정		4종	95	2,400		학		동		
변경				1,400					삼	성
신설		3종	14	1,000		삼	성	동	도	국

\*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278 호</p> <p>도로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고시중일부변경고시</p> <p>도로교통법 제 6 조 1 항의 규정에</p>	<p>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고시 (서울특별시 고시제 84 호 (73.5.28) 중 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.7.3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-

6. 손수레 자전거 통행 제한구역 설정  
가. 제한구역

가	구	간
충정로	아현모타리 - 서대문	
신문로	서대문 - 광화문	
종로	광화문 - 종로 1 가 - 북대문 (충신동입구)	
왕산로	북대문 - 신설동 - 청량리모타리	
외주로	서울역 - 염천교 - 외주로모타리 - 서대문 - 독립문	
세종로	광화문 - 중앙청	
대명로	남대문 - 시청 - 광화문	
청계로	동아일보 - 청계 2 가 - 청계 6 가	
울지로	시청 - 울지로 2 가 - 서울운동장	
남대문로	서울역 - 남대문 - 시경앞 - 명동입구 - 화신	
퇴계로	서울역 - 필동 - 광희육교 - 서울운동장	
소공로	시청 - 조선포털 - 상은본점앞	
사직로	중앙청 - 사직공원 - 독립문	
삼일로	충무로 2 가 - 인사동 - 안국모타리	
돈화로	필동 - 청계 3 가 - 종로 3 가 - 돈화문	
대학로	해화모타리 - 이화동 - 울지로 5 가 - 퇴계 5 가	
울곡로	한국일보 - 와룡동 - 원남동	
창경로	해화모타리 - 창경원 - 울지로 4 가 - 퇴계 4 가	
한강로	서울역 - 삼각지모타리 - 제 1 한강교 남단	
신촌로	서소문 - 외주로 - 아현동	
충무로	중앙우체국 - 충무 2, 3 가 - 충무 5 가	

가 로 명	구 간
명 동 로	경동입구 - 성모병원 - 중앙극장
진 흥 로	중앙극장 - 퇴계 6가
수 표 로	남학동 - 청소년회관 - 가회동
무 교 로	개풍빌딩앞 - 동아일보뒤 - 삼청동입구

다만 동행제안 구역이라도 횡단통행은 허용한다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79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 
지 적 승 인

1. 서울시 고시 제 378 호 (78.7.31) 로 결정고시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

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  
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파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60.7.30

서울특별시장

○ 도로지적승인초서

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시 점	중 전	비 고
대 로	3	23	25m	4,250m	신길동대 1-6	구로동대 1-50	800㎡구간 지 적 승 인
"	"	118	"	4,950m	구로동구로 3 공단	광명아파트중 1-112	
"	"	119	"	670m	영동포역	신길동대 3-28	
"	"	134	"	1,000m	대방동대 1-41	"	
중 로	1	171	20m	430m	가리봉동 광로 19	가리봉역앞 중 1-114	

\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280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 
결정 및 변경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  
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  
부표시 제463호(79.12.10)의

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  
이 결정 및 변경하였기 이를 고  
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 
및 시민농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 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8.1  
서울특별시장

○ 도로 조 서

구분	등급	특별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1	244	천호동 185	천호동 121	
변경	"	"	250	"	길동(중1-84)	노선연장
기정	"	"	156	" 178	천호동 121	
변경	"	"	174	"	중로 1-84	노선연장
기정	"	3	62	" 153	천호동 153	
변경	"	"	76	"	중로 1-84	노선연장
기정	"	2	133	쌍문동 423	쌍문동 422	
변경	"	1	166	"	우이천 좌안	죽원확장및 노선연장
기정	"	4	18	동교동 155	동교동 155	
변경	"	"	18	"	"	폐지
신설	"	3	95	우이동산 153	우이동 187	
기정	"	"	90	북아현동 161	북아현동 161	한성중고교
변경	"	"	90	"	"	교지내 도로폐지

\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**공 고**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37 호

열사용기자제제조업체허가취소공고  
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23 조

3항에 의거 열사용 기자제의 제조업체를 다음과 같이 허가취소 하고  
무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80.7.18

서울특별시 장

허가번호	업체명	대 표	소재지	종 목	위반내용	처분내용	적용법조
170	삼진철공 산업(주)	이숙철	양명 2 가 43-5	콘크리트 에어로폼 콘크리트	무단제조	허가취소	에너지이용합리화 법제 23조 및제 73조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44 호

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일부  
변경및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

1. 영동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 
내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사  
업계획 일부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 
사유가 발생되었기 토지구획정리사  
업법 제 34 조 및 제 55 조의 규정  
에 의거 사업계획 일부 변경 및  
환지계획 변경코자 동법 제 33 조  
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 
이해 관계인에게 14 일간 공람에  
공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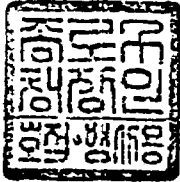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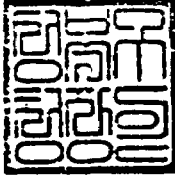

2. 계획변경 도서는 도시계획국 구  
획정리과에 비치하고 보이고 있으  
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 
게는 개별 통지한다.

1980.7.31

서울특별시 장

계획 변경 내역

가. 사업명 : 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  
나. 변경면적 : 11,743평  
다. 변경위치 : 강남구 방배동 210의 2  
의 89 필  
라. 변경내용 : 환지계획변경및새도로  
일부폐지 ( 도서는 생략 )

<p>○서울특별시공고제 245 호</p> <p>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뢰와 같이 개각 사용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0.7.31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 <p>1. 공 인 명 : 종로구청장인 (호적, 병사용)</p> <p>2. 사용개시일 : 1980.8.4</p> <p>3. 공인의인영</p>		<p>개각 사용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</p> <p>1980.7.31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 <p>1. 공 인 명 : (1) 성북구청장인 (2) 성북구청장인 (호적, 병사용)</p> <p>2. 사용개시일 : 1980.8.4</p> <p>3. 공인의인영</p>	
인		인	
영		영	
공인명	종로구청장인(호적, 병사용)	공인명	성북구청장직인및계인
<p>○서울특별시공고제 246 호</p> <p>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뢰와 같이</p>		<p>성북구청장직인및계인 (호적, 병사용)</p>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47 호

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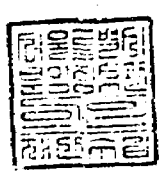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 
신조 사용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공

인 조별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  
1980.7.31

서울특별시 장

1. 공인명: 서울특별시분임집수관인(재산수입)
2. 사용개시일: 1980.8.4
3. 공인외인명: 다음

공 인 외 인 명

인  명	
------------	--

◎ 강남구공고제 255 호

공인신조사용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조별 제 2 조 및  
제 6 조 규정에 의거 작동분임 물품  
관리관인신조 사용 승인하였기 이를  
공고한다.

1980.7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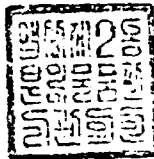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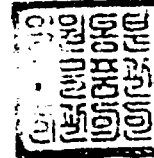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















1. 신조사용 개시일: 80.7.25 09:00
2. 공인신조종: 논현동 외 23개동
3. 공인외인명: 별첨

공인명 서울특별시분임집수관외인  
(재산수입)

신조 사용 승인공인 명세서

기관명	공 인 별	공 인 명	사용개시일자	비 고
논 현 동	분임물품관리관공인	논현동분임물품관리관인	80.7.25.09:00	
역삼 1 동	•	역삼 1 동	•	
역삼 2 동	•	역삼 2 동	•	
방배 2 동	•	방배 2 동	•	
반포 1 동	•	반포 1 동	•	
양재 동	•	양재 동	•	
일원 동	•	일원 동	•	

기관명	공인명	공인명	사용개시일자	비고
서초 2 동	본인물통관리공인	서초 2 동본인물통관리공인	80.7.25.09:00	
서초 1 동	.	서초 1 동	.	
대치 2 동	.	대치 2 동	.	
방배본동	.	방배본동	.	
신사동	.	신사동	.	
대치 1 동	.	대치 1 동	.	
삼천동	.	삼천동	.	
도곡동	.	도곡동	.	
청담동	.	청담동	.	
압구정동	.	압구정동	.	
반포 2 동	.	반포 2 동	.	
잠원동	.	잠원동	.	
세곡동	.	세곡동	.	
반포본동	.	반포본동	.	
내곡동	.	내곡동	.	
학동	.	학동	.	
남포 1 동	.	남포 1 동	.	
공 인 의 인 영				
				
공인명	남산 1 동	남산 1 동	남산 2 동	남산 2 동
인				
공인명	남포 1 동	양재동	일원동	서초 2 동

인 영				
공인명	서 초 1 동	대 치 2 동	남 백 본 동	신 사 동
인 영				
공인명	대 치 1 동	삼 성 동	도 구 동	청 담 동
인 영				
공인명	압 구 정 동	반 포 2 동	감 산 동	학 구 동
인 영				
공인명	반 포 본 동	대 구 동	학 동	남 백 1 동

◎ 관악구 공고 제 302 호

토지수용제결을위한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3 호 ( 78. 7. 27 ) 및 제 367 호 ( 79. 8. 16 ) 로 도시계획시설 ( 학교용지 )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에 있어 기업자로부터 관악구신림동 105-37 의 2 필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토지수용법 제 36 조 및 동법시행령제 1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.

2. 관계서류는 관악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0. 8. 1

관 악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672 번지의 5 필지

나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서울낙골국민학교 신설

다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

교육감

라. 수용할토지의 지번 및 소재지 :

관악구신림동산 105-14

관악구신림동산 105-37

관악구신림동산 105-38 ( 별첨 토지조서 - 기재생략 )

마.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의 주소, 성명 :

종로구당수동 158 김 근 철

종로구인의동 28-1 김 두 율

바. 재결신청서및 관계서류(사본) :

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비치

사. 공고 ( 열람 ) 기간 :

1980. 8. 14 ( 14 일간 )

정 정

시보 제 790 호 ( 80. 7. 14 ) 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0 호 ( 80. 7. 14 )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함.

1980. 7. .

서울특별시장

오	정
양묘포지조성	시설녹지조성
건설부 고시 제 41 호 ( 77. 3. 16 )	건설부 고시 제 453 호 ( 79. 12. 10 )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고시로 갈음함.	삭 제